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정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2024년 7월 9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54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정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공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단의 임·직원은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 및 수당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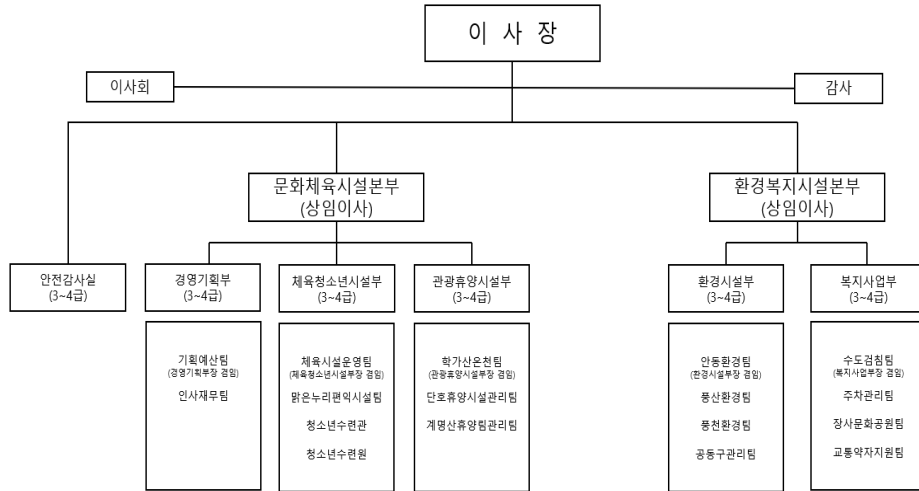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4. 7. 9.)

이 정관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 구 표



직급별정원표

구 분	계	임 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252	3	5	13	24	29	29	149
임 원	3	3						
일 반 직	249		5	13	24	29	29	14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표 및 직급별 정원표 변경
- 당연직 감사 직명 변경 : 기획예산실장 → 공단 업무 담당 부서장

□ 주요내용

- [별표] 기구표 및 직급별 정원표 변경
- 제10조제2항 당연직 감사 변경 : 기획예산실장 → 공단 업무 담당 부서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2024년 7월 9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55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단에는 상임이사로 문화체육시설본부장과 환경복지시설본부장을 두며, 이사장 직속으로 안전감사실을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산하에 경영기획부(기획예산팀, 인사재무팀), 체육청소년시설부(체육시설운영팀, 맑은누리편의시설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관광휴양시설부(학가산온천팀, 단호휴양시설관리팀, 계명산휴양림관리팀)를 환경복지시설본부장 산하에 환경시설부(안동환경팀, 풍산환경팀, 풍천환경팀, 공동구관리팀), 복지사업부(수도검침팀, 주차관리팀, 장사문화공원팀, 교통약자지원팀)를 둔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9조 제1항의 안전감사실장, 경영기획부장, 체육청소년시설부장, 관광휴양시설부장, 환경시설부장, 복지사업부장은 일반직 3~4급으로, 그 외 팀장은 일반직 3~5급으로 보한다.

②제9조 제1항의 경영기획부장은 기획예산팀장, 체육청소년시설부장은 체육시설운영팀장, 관광휴양시설부장은 학가산온천팀장, 환경시설부장은 안동환경팀장, 복지사업부장은 수도검침팀장을 겸임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무분장) 공단 조직의 사무분장은 [별표3]과 같다.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24.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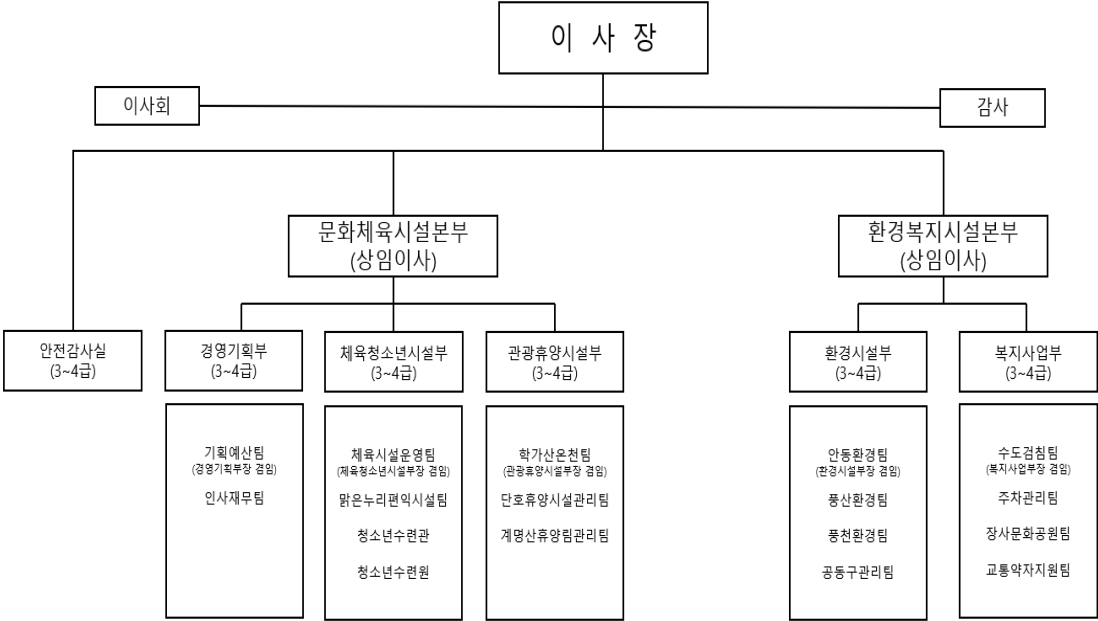
제3조제1항 중 “감사책임자(경영지원실장)”을 “감사책임자”로 한다.

②안동학가산온천장 옥내광고물 설치 및 광고대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본부장”을 “문화체육시설본부장”으로 한다.

개 정 안
[별표1]

기 구 표



[별표2]

직급별 정원표

○ 직급별 정원표

직 종 별	직 급 별	정 원
소 계		252
임 원	소 계	3
	이 사 장	1
	상임이사	2
일반직	소계	249
	3급	5
	4급	13
	5급	24
	6급	29
	7급	29
	8급	149

○ 5급이하 직렬별 정원

총계	행정	전산	기계	전기	환경	생물 자원	운전	청년 지도	체육 지도	안전 보건	토목	운영	장례	공무
232	21	2	21	20	12	1	1	4	6	1	1	115	4	23

신 설

[별 표3]

사무분장(제12조 관련)

☐ **안전감사실**

구분	사무분장
안전감사실	• 공단 감사사무 • 직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 재난안전관리 업무 • 공단 총무 및 행사, 의전업무 • 공단 보건관리 업무 • 공단 전산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 재산(물품) 관리 • 제규정의 제·개정 및 법무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시설본부**

구분	사무분장
경영기획부	기획예산팀 • 기획, 조정 • 경영평가 및 심사분석 • 경영혁신 업무 • 경영행정도입 및 경영사업집행 • 예산의 편성, 수입금관리 분석 및 수입증대 방안 연구 • 이사회의 운영 • 공단 CS업무
	인사재무팀 • 비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원 및 인사관리 • 공단 전체 회계 • 예산 집행 및 결산사무 • 신규사업개발 • 조직관리 • 임·직원의 임용 및 교육 • 복리후생 및 노무관리 • 민원사무, 문서, 보안 및 직인관리 •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체육청소년 시설부	체육시설운영팀 • 체육관, 볼링장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 인공암벽 및 족구장 유지관리 • 체육관 및 볼링장, 부대시설 사용허가 및 수입금 관리 • 체육관 및 볼링장 홍보 및 고객관리 • 체육관 및 볼링장운영프로그램 개발 •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맑은누리편익시설팀 •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입금 관리 •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홍보 및 고객관리 •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운영프로그램 개발 • 기타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구분		사무분장
체육청소년 시설부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관 및 부대시설 유지 관리 • 청소년수련관 홍보 및 사용자 유치 •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 실내수영장 운영 및 안전관리 • 스마트체육관 및 부대시설 운영·안전관리 •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및 회원지도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수련활동 및 취미동아리 지원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 기타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수련원 및 부대시설 유지 관리 • 청소년수련원 홍보 및 사용자 유치 • 시설 사용허가 및 수입금 관리 • 부대시설 운영·안전관리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타 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관광휴양 시설부	학가산온천팀	• 학가산온천장 및 부대시설 유지 관리 • 학가산온천장 홍보 및 고객 유치 • 수질관리 및 부대시설 운영·유지 관리 • 매표 및 수입금 관리 • 고객안내 및 정기회원 관리 • 검표 및 탈의실 유지 관리 • 온천탕 및 노천탕 유지관리 • 용역 및 임대사업 관리 • 기타 학가산온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단호휴양시설관리팀	• 낙동강생태학습관, 단호샌드파크캠핑장, 마애선사유적전시관 및 숲문화공원, 백조공원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입금 관리 • 사업의 홍보 및 고객관리 • 운영프로그램 개발 • 기타 단호휴양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계명산휴양림관리팀	• 계명산자연휴양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입금 관리 • 계명산자연휴양림 홍보 및 고객관리 • 계명산자연휴양림 운영프로그램 개발 • 기타 계명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환경복지시설본부

구분		사무분장
환경시설부	안동, 풍산, 풍천 환경팀	- 하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 하·폐수처리장 재산 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 하폐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 관리 - 하·폐수 처리과정별 시료 채수, 수질 분석 - 수질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하폐수처리시스템의 분석 - 분뇨처리시설 관리 - 하수슬러지(부숙화) 처리시설 관리 운영 - 중계펌프장 관리 운영
	공동구관리팀	-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 - 공동구 보안·점검·순찰 - 공동구 사용업체 관리 - 기타 공동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복지사업부	수도검침팀	-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점검 -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전달 - 상·하수도 요금 및 체납금 납부 독려 - 상·하수도 검침 관련 현장 민원처리 - 상수도 공급시설, 훼손예방 지도 및 수용가 관리 등 기타 검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팀	-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 공영주차장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공영주차장 원가계산 및 입찰, 수입금 관리 - 공영주차장 민원처리 - 기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장사문화공원팀	- 장사문화공원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장사문화공원 사용허가 및 수입금 관리 - 장사문화공원 홍보 및 고객관리 - 장사문화공원 임대사업 관리 - 장사문화공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 기타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지원팀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민원업무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사용허가 및 수입금 관리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홍보 및 고객관리 - 기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및 직위, 사무분장 변경

□ 주요내용

- 제9조(조직), 제10조(직위) 개정
 - 안전감사실장, 경영기획부장, 체육청소년시설부장, 관광휴양시설부장, 환경시설부장, 복지사업부장 : 3 ~ 4급
 - 그 외 팀장 : 3 ~ 5급
 - 경영기획부장, 체육청소년시설부장, 관광휴양시설부장, 환경시설부장, 복지사업부장의 겸임(주무팀) 명문화
- 조직의 사무분장 내용 [별표3]으로 이동
- [별표1] 기구표 변경
- [별표2] 직급별 정원표 변경
- [별표3] 사무분장표 신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2024년 7월 9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56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경영검토 등 부패방지관련 보고에 관한 사항
- 11.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인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선임하되”를 “호선하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보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관리한다”를 “보조한다”로 한다.

부 칙(2024. 7.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충되는 조문 정리 및 용어 명확화
- 제4조(의장 및 회의소집) 중 의장을 선임에서 호선방식으로 변경

□ 주요내용

- 상충되는 조문 정리 및 용어 명확화
 - 제3조제1항제10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내용 추가
 - 제14조 간사의 역할 명확화
- 제4조(의장 및 회의소집) 중 의장을 선임에서 호선방식으로 변경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2024년 7월 9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57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직에”를 “부서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진소요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39조제3호·제5호·제6호·제7호”를 “제39조제3호·제5호·제6호(최초 1년, 둘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 이내)·제7호·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제5호·제6호·제7호”를 “제3호·제5호·제6호(최초1년, 셋째자녀부터는 최대 3년 이내)·제7호·제8호”로 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호 중 “제1호·제3호 및 제7호”를 “제1호·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호 해당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제3항 중 “제39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를 “제39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문화관광본부장으로 하고, 환경복지본부장, 경영지원실장 및 부장”을 “문화체육시설본부장으로 하고, 환경복지시설본부장, 포상 관련 담당 부서장 및 3급 부서장”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4. 7. 9)

이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종별 직급 및 직위(제4조 관련)

직 종	직 급	직 명	직 위	비 고
일반직	3급	부장	<u>실장,부장,팀장,관장,원장</u>	
	4급	팀장	<u>실장,부장,팀장,관장,원장</u>	
	5급	차장	<u>팀장,관장,원장</u>	
	6급	대리		
	7급	주임		
	8급	주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충되는 조문 정리 및 용어 명확화
- 승진, 승급, 근무연수 산정에 관한 예외 휴직 조항의 통일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및 직위 변경

□ 개정내용

- 용어 명확화를 위한 수정
 - 제18조 보직 → 부서, 제24조 승진소요기간 → 승진소요 최저기간
-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33조(정년)의 각 목 삭제
- 제24조, 제26조, 제41조 중 예외 휴직 조항의 통일
- 조직개편에 따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 명칭 수정
- 조직개편에 따른 [별표] 직종별 직급 및 직위 수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임원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2024년 7월 9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58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임원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임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공단업무 감독기관장”을 “임면권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임면권자”를 “시장”으로 한다.

부 칙(2024. 7.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충되는 조문 정리 및 용어 명확화

□ 주요내용

- 용어의 명확화 : 제7조, 제13조
 - 제7조(복종의 의무)의 명령권자 명확화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제13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허가권자 명확화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2024년 7월 9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59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3호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24조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유급휴가”를 “유·무급휴가”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이사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사장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를 준용한다.

제26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29조, 제130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4시간 이내)

제28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2024. 7.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맞게 전반적인 조문 개정
- 공가사유로 헌혈에 참가할 때 추가
- 용어정리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주요내용

- 제23조(휴일)제1항의 불필요한 조문 정리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 명문화
- 제24조의2(임산부의 보호), 제24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문의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맞게 개정
- 제26조(공가) 사유 중 헌혈에 참가할 때(4시간 이내) 신설
- 제28조(포상휴가 중)제3호 삭제 : 청백봉사상을 받은 때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2024년 7월 9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60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노무관리”를 “인사관리”로, “경영지원실(인사담당부서)을”을
“부서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문화관광본부장으로 하고, 환경복지본부장과 경영지원실
장”을 “문화체육시설본부장으로 하고, 환경복지시설본부장과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체결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요구하면”을 “체결하
고,”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퇴직급여금) 만 1년이상 근속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보

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단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2024. 7. 9)

이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채용 사전심사제 심사위원 직위 변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조항 신설
- 용어정리 및 명확화

□ 주요내용

- 제9조의2(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의 심사위원 직위 변경
- 제39조의2(퇴직급여) 조문 신설
- 용어정리 및 명확화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2024년 7월 9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61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24. 7.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기능인재 견습직원 채용협의 요청서

합격년도	채용예정 직종·직급
20 년	

대상자	구분	주요내용	비고
성 명 (생년월일)	평가 결과	○근무성적평가: ○임용여부심사:	
	직무 능력 관련 사항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임용 직렬 관련 사항	○선발당시직렬(분야): ○본인희망직렬(직류):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직렬(직류):	
성 명 (생년월일)	평가 결과	○근무성적평가: ○임용여부심사:	
	직무 능력 관련 사항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임용 직렬 관련 사항	○선발당시직렬(분야): ○본인희망직렬(직류):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직렬(직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견습직원에 대한 직원 채용협의를 요청합니다.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 ○ ○ (서명/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충되는 조문 및 용어 정리
- 기능인재 견습직원 채용협의 요청서 서식 신설

□ 주요내용

- 상충되는 조문 및 용어 정리
- 별지 제7호 서식(기능인재 견습직원 채용협의 요청서) 신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2024년 7월 9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62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이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로 한다.

부 칙(2024. 7.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숙직근무자의 휴무의 사용 가능기간(30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 주요내용

- 제1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조항에 휴무 사용 가능기간(30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개정 : 노사협의회 건의사항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2024년 7월 9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63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임원”을 “임원 및 3급 직원”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평가급) 임·직원에 대한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에 따르며, 평가방법, 지급기준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거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4. 7. 9)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12]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제44조관련)

구 분	지급대상	지 급 액	비 고
정액급식비	임 직 원	• 월 140,000원	보수지급일 지급
직책급 업무추진비	임 직 원	• 이 사 장 : 월 650,000원 • 상임이사 : 월 350,000원 • 3 급 : 월 100,000원	보수지급일 지급
직급보조비	임 직 원	• 이 사 장 : 월 400,000원 • 상임이사 : 월 400,000원 • 3 급 : 월 250,000원 • 4 급 : 월 185,000원 • 5 급 : 월 180,000원 • 6~8급 : 월 175,000원	보수지급일 지급
명절휴가비	임 직 원	• 월 기본급의 연 120%	설날 및 추석에 각 60%씩 지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충되는 조문 및 용어 정리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보조비 조정

□ 개정내용

- 제31조(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임원 → 임원 및 3급 직원으로 개정
- 제35조(성과급)을 평가급으로 개정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별표12]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 중 4~8급 직급보조비 상향 조정